

# 제6강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

Welcome to  
Korea Customs service



## <주요 강의내용>

1. 관세의 과세요건
2. 과세물건
3. 과세물건의 확정시기
4. 납세의무자
5. 과세를 위한 법령적용 시기
6. 과세환율

## 1. 관세의 과세요건

### □ 과세요건이란?

-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말한다. 즉, 관세를 부과하는 데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관세의 과세요건이라 한다.
- 관세의 과세요건으로 흔히 과세물건, 납세의무자, 세율, 과세 표준의 네가지를 4대 요건이라 한다.

### □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의 종류(7) : 관세,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, 주세, 교통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

- 이들 세금의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르다. 관세 이외의 세금은 각기 개별세법에 과세요건을 규정

## 2. 과세물건

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.(관세법 제14조)

- 무역거래 물품 중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수입물품
  -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한 세금을 환급
  - 통과화물이나 환적 화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
- ◆ 수입되는 물품은 그 경로가 어떠한가는 과세와 무관
  - 항공화물, 육상화물, 해상화물, 특송화물을 불문
  - 여행자의 휴대품, 우편물, 이사화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
- ◆ 물품이 아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, 서비스 등은 제외
-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: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

### 3. 예외적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(1)

- ① 선용품을 허가 받은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: 적재허가를 받은 때
-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한 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경우 :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: 멸실이나 폐기된 때
- ③ 보세공장(보세건설장, 종합보세구역)외 작업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경우 : 작업허가를 받은 때보세운송물품이 정해진 기간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: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

#### 4. 예외적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(2)

- ⑤ 수입신고 수리전에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: 당해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때
- ⑥ 수입신고전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: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
- ⑦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 :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 : 도난 또는 분실된 때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: 수입된 때

## 5. 일반납세의무자

-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
  
-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판단
  - ① 대행 수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
  - ② 대행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 또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된 수하인
  - ③ 수입신고 이전에 물품이 거래된 경우에는 물품의 양수인

## 6. 특별납세의무자(1)

- 선(기)용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: 적재허가를 받은 자
-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한 다음 기간 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경우 : 작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
- 보세구역 장치중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: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물품보관인
- 보세운송물품이 기간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: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을 얻은 자
-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한 것으로 과세대상인 물품 : 당해 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
- 우편물 :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

## 7. 특별납세의무자(2)

- 도난 또는 분실된 외국물품 :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그 장치장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. 기타 물품은 물품의 보관인이나 취급인
- 관세법이나 다른 법에서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경우 :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
- ✓ (예) 외교관용 면세물품의 거래시 물품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
- 기타의 경우 :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
- 일반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경합될 때는 특별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진다.



## 8. 기타 납세의무자

- 확장된 납세의무자
  - ◆ 연대납세의무자 : 화주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세관장이 추징을 하고자 하지만 화주가 행방불명일 경우 등에는 수입신고인인 관세사가 납세의무를 진다.
  - ◆ 납세보증자 : 관세법이나 다른 법령,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는 보증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
  
- 2차납세의무자 :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
  - 청산인 등
  - 과점주주
  - 과점주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
  - 사업의 양수인 등

## 9. 과세를 위한 법령의 적용시기

- 원칙적 적용시기 :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
  - 법령에 따라 세율, 감면세 여부, 납세의무자 등이 결정되므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고려할 사항
  
- 예외적인 적용시기
  - 예외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법령 적용의 시기
  -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: 사용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날

## 10. 과세 환율

### □ 과세 환율이란?

- 과세를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 적용하는 환율

### □ 과세 환율의 결정과 적용

- 결정 : 관세청장이 매주 토요일 당해 주간 은행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 환율을 결정하여 고시
- 적용 : 고시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고시된 과세 환율을 적용